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00

발의연월일: 2021. 11. 18.

발 의 자:이병훈·고영인·김경만

김병욱 · 김주영 · 노웅래

도종화 · 양향자 · 어기구

오영환 · 오영훈 · 윤영덕

이개호 · 이장섭 · 임오경

전혜숙 · 홍성국 의원

(17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됨.

현행법에서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임에도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과 집행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이고자 함(안 제2조).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
| 18. <u>"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u> | 18. <u>"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u> |
| 만의 자(「초·중등교육법」 |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 |
|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 | 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 |
| 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 | 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 한다)를 말한다. | |
| 19. ~ 23. (생 략) | 19. ~ 23. (현행과 같음) |